「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16년 제6권 제1호 91P-123P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합한 회계기준 설정 방향
: 일본 NPO법인 회계기준을 중심으로*

네모토 마사쯔구**· 이인영***

본 연구는 한국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합한 회계기준 설정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본 NPO법인 회계기준 그중에서도 특히 기부와 자원봉사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우선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 특유의 요소인 현물기부와 자원봉사가 '손익 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아 협동조합의 활동 실태가 과소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 NPO법인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현물기부나 자원봉사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재무제표에 주기(注記)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동 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향후 한국 협동조합의 실태를 회계 보고에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필요한 바, 향후 협동조합에 적합한 회계기준의 도출 및 이와 정합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정 가능성이 시사된다.

주제어: 협동조합 기본법, 공동체, 일본 NPO법인 회계기준, 현물기부, 자원봉사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8046954).
** 제1저자,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교신저자,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친구들 상임이사

Ⅰ. 서 론

한국에서는 일찍이 20세기 초부터 다양한 협동조합 활동이 전개되어 온 역사가 있으며[1] 그 기초 위에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면서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이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기본법으로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2].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수는 전국에 9,455개(2016년 5월말 현재)가 있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그러나 기획재정부(2015) 조사에 따르면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 비율은 55.5%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협업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선정되지 않은 경우 협동조합이 운영되지 않는 사례(이인영, 2013: 75-79), 정부지원을 예상하는 막연한 기대로 설립하는 경향(박대호, 2016: 7) 등이 있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이 그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의 49.4%가 자원봉사 등 노동력 제공, 생산물품 및 현금 기부 등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와 자발성 등 협동조합의 원칙이 수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적지 않은 영역에서 기부나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제49조의 2 및 제96조의 2에서 경영공시 자료로서 사

1) 홍동면 풀무 고등 공민학교, 풀무 협동조합 구판장, 청십자 의료 협동조합, 가톨릭 원주교구 사회개발 위원회, 도시산업선교회의 협동조합 운동, 양서협동조합 등의 선례가 있다(김형미, 2013: 16-34).

2)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 · 자립적 ·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 이하 법령을 생략하고 조문만 쓰기로 한다).

3)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난 현재 전국의 인증 사회적기업 수 1,548개(2016년 5월말 기준)에 비하면 그 증가세가 가파름을 알 수 있다.

업 결산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제1항에서 결산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의 2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물기부와 자원봉사 부분에 대한 정보는 사업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으나 손익 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현물기부나 자원봉사가 포함된 협동조합의 사업 규모가 회계 상 실제보다 작게 평가되기 쉬운 문제가 있다. 또한 현물기부나 자원봉사에 대한 과소평가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부족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 특유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간 투자대비 사회적 수익(SROI)[4], 사회적 회계 등의 기법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져 왔다. SROI는 성과로 나타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예측을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시하고 있다(Social Value UK, 2010: 1-4). 한편 사회적 회계는 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장원봉, 2014: 4). 그러나 사회적 회계는 많은 다양성이 있는 데다 이를 작성하기 위한 예산과 시간적 부담, 보편적 지표 작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도입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5].

그렇다고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회계기준에 현물기부와 자원봉사라는 중요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등의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직 활동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데 회계와 법제도의 연계는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 협동조합 기본법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더 많은 현물기부와 자원봉사가 이루어

4) 협동조합 리더들의 인식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데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윤환, 2016: 118).

5) 2010년도 초에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사회적 회계 보고서가 사회적 회계감사 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발표되었다(장원봉, 2014: 5).

진다. 그러므로 현물기부와 자원봉사를 회계에서 파악할 필요성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2010년에 'NPO법인[6] 회계기준'을 만들어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을 회계 상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7] 이어 2011년 NPO법 개정을 통하여 NPO법인 회계기준이 인정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일본에서는 기부와 자원봉사를 회계 보고에 기재할 수 있게 되었고 회계 보고를 통하여 NPO법인의 실질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NPO법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촉진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없다는 것이 한국 실정과 다른 점이다. 한국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이 병렬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 비하여 일본은 NPO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물기부와 자원봉사를 중요한 지원기반으로 하고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비영리 활동을 전개하는 일본 NPO법인은 현재 한국 기본법 협동조합에 가장 유사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합한 회계기준 설정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본 NPO법인 회계기준을 분석하고 특히 기부와 자원봉사 부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향후 한국 협동조합 회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6) NPO법인이라고 함은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의 약칭이다. 한국 협동조합 기본법에 해당되는 법률이 현재 일본에 없지만 NPO법(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이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7) NPO법인 회계기준은 시민에게 알기 쉬운 회계 보고를 목적으로 회계 보고 작성자의 관점 이상으로 이용자 관점을 중요시하는 것, 사회의 신뢰에 부응하는 회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를 전제로 한 재무회계 체계에 더하여 기부와 자원봉사자 등 NPO법인에 특유한 사정을 가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特定非營利活動法人の會計の明確化に關する硏究會, 2011: 4).

Ⅱ. 이론적 고찰

1. 협동조합과 회계

1)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이란 국제 협동조합 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에 의하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단체'라고 정의되고 있다(이원빈, 2012: 4). 1995년에 개정된 ICA 7개 원칙은 ①자발적 가입 · 탈퇴, ②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가치와 독립, ⑤교육, ⑥협동조합 간 협동, ⑦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근대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면서 발전해 왔다(이금노, 2012: 1-12). 선구적으로는 19세기 영국에서 조직된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유명하고 20세기 이후 이러한 근대적 협동조합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두레, 품앗이, 계와 같은 상부상조 협동생활을 조직적으로 영위해 온 역사가 있다. 그러한 전통에 기초하면서 시작된 한국의 근대적 협동조합 운동은 일제 하에서 일본 유학생계 협동조합 운동, 전도교계 협동조합 운동 그리고 기독교계 협동조합 운동 등으로 전개되었으나 총독부에 의한 해산, 압력 때문에 좌절되었다. 하지만 해방과 한국 전쟁을 겪은 후 1950년대 후반부터 천주교를 중심으로 신용 협동조합(신협)[8] 운동이

8) 신협과 일반 은행의 차이에 대하여 박진(2006)은 다음 4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즉 첫째, 신협은 인격 결합체인 데 비하여 은행은 자본 결합체이다. 둘째, 신협은 상호금융을 하는 데 비하여 은행은 주식회사에 의한 기업금융을 한다. 셋째, 신협의 구성원은 특정 조합원인 데 비하여 은행의 거래는 불특정다수이다. 넷째, 신협은 전속거래인 데 비하여 은행거래는 일시적이고 일방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신협에 대해서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집중한 나머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

전개되었다[9]. 이어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신용 협동조합법 외에도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이 마련되었다[10]. 그러나 이 시기 관 주도의 협동조합은 일정한 협동조합의 역할과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한 조합원의 자율성과 주체성, 민주성 등이 상당히 훼손된 한계가 있었다(김소남, 2013: 2). 한편 원주 지역을 비롯하여 민간주도 협동조합의 선구적 활동 또한 전개되었지만 일반 지역주민들이 간편한 절차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기다려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이외에 협동조합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야에 관계없이(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11]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만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협동조합은 조합원 스스로가 출자의 방식으로 소속하고 조합원 자격을 가지며 조합을 소유하면서 조합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생산·판매·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이 소유자이자 사용자가 되는 자율적 결성단체라고 할 수 있다(이원빈, 2012: 4).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2].

영하지 못한 채 획일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영실, 2004: 54).

9) 그 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신협과 새마을금고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최춘방, 1983: 34).

10) 농업 협동조합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수산업 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 협동조합법, 산림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등, 신용 협동조합법을 포함하여 총 8개 개별법이 존재한다.

11) 단, 기본법 제45조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해서는 협동조합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기존 협동조합법에서는 1차 산업 및 금융, 소비 부문의 협동조합만 설립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하여 2차, 3차 산업이 상당한 비

첫째, 기본 8개 개별법의 한계를 개선한 독립적인 일반법이다.

둘째, 5명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셋째, 출자 액수와 상관없이 1인 1표 즉, 1인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넷째, 소규모, 소액으로도 창업할 수 있다.

이로써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인적자원 회계의 중요성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사업 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된다(§52①). 여기서 회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회계는 흔히 기업의 공통 언어라고 한다. 이는 기업의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적과 한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려 주고 그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계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최은주 · 고성옥, 2014: 2).

<그림 1> 유용한 정보제공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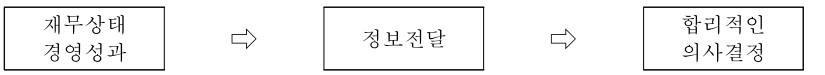

자료: 정성군 · 송춘호(2015: 3).

그런데 전통적 회계는 거래를 기록 · 분류 · 요약 · 해석하는 기술로 정의되

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시대의 산업구조와 맞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정성군 · 송춘호, 2015).

고 기계적·반복적·계산적 회계의 실무적 측면을 강조해 온 데 비하여 현재의 회계는 경제적 정보를 인식·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인 정보 시스템으로 정의됨에 따라 사회과학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더욱 광범위한 자료와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있다[13]. 그리하여 이미 1966년에는 미시간 대학 사회문제 연구소에서 인적자원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동안 실증적 연구와 회계이론의 통합이 모색되어 왔다(박승의, 1984: 250).

1966년에 미국회계학회가 발표한 기초적 회계이론에 관한 보고서는 회계정보의 기준으로 목적 적합성, 검증 가능성, 불변성, 양적 표현 가능성이라는 4 가지를 들면서 그중에서 목적 적합성을 가장 중요시하였다(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66: 4). 그리하여 인적자원 회계는 '의사 결정자를 위하여 인적자원에 관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Eric, 1974: 174-177).

인적자원 회계의 구체적 모델 구축은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앞서 제시한 박승의(1984), 최순우(1987) 외에도 박봉진(2000), 윤성용 외(2009) 등에 의한 연구가 다수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적자원 회계 연구는 영리기업을 전제로 해 온 데 비하여 비영리 성격을 지닌 협동조합에 적합한 인적자원 회계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비교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영리기업에 대한 인적자원 회계의 필요성과 같은 맥락에서 협동조합에 있어서도 그 중요한 특징인 기부, 자원봉사를 반영한 회계가 필요하다.

여기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사업에 대한 조항에서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협동조합들은 그렇게 정해진 사업의 필요와 협동조합의 역할에 공감하고 활동하고 있다. 협

13) 기업이 갖고 있는 인적 능력과 조직력의 가치를 올바르게 측정하여 이를 정확히 인식한다는 것은 경영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 것이다(최순우, 1987: 74).

동조합은 이 영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정하고 비용을 지출한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은 자발적 의지와 노력을 투여하며 참여를 위하여 발생하는 부담을 감당함으로써 자발성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은 협동조합의 성과물로 구현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회계 상 손익계산서에는 항목과 비용으로만 기록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는 회계에 대한 조항이다. 특히 제52조는 결산 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 중의 하나로서 손익 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손익 계산서에 대한 정의는 없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정한 회계 관련된 조항들은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회계를 정한 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맞는 회계와 규정의 보완이 요구되는 것이다.

2. 협동조합 두 가지 성격의 제도적 반영

1) 협동조합의 두 가지 성격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하는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일반 협동조합과 구별된다.

일반 협동조합은 특정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구성하는 법인으로 최소 5명 이상이 모이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업체로서의 성격이 있는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김수란, 2014: 16).

이 협동조합의 두 가지 성격[14]과 협동조합에 대한 투입과 산출이라는 측

14) 퇴니에스는 협동조합을 게젤샤프트도 게마인샤프트도 아닌 '게노센샤프트'라고 불렀다. 독일어로 게노센샤프트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지에 기초하여 계약으로 성립하는 평등한 집단'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은 공동체를 자발적인 의지를 지닌

면을 교차시키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 본 일반 협동조합의 두 가지 성격과 회계 상 손익 계산서에 반영되지 않는 영역(음영부분)

구 분	협동조합에 대한 투입	협동조합에 의한 산출
사업체적 성격	출자금	출자 배분금(배당)
	유상 활동(유급근무)	인력 고용
	조합비*	조직 운영
공동체적 성격	구매 참여	이용실적 배분금**
	무상 활동(자원봉사)	수익성 낮지만 필요한 사업 추진***
	현물기부	
	조합비*	

* 조합비를 사업체적 성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적 성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용실적 배분금은 일반 협동조합에게는 출자 배분이 아닌 손금이 되고 조합원에게는 배당 소득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김수란, 2014: 74-77).

*** 협동조합의 공동체적 산출에 대해서는 이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SROI, Social Impact 등 다수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적 성격 영역에서 산출되는 성과가 초창기에는 수익성이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나타나 사업체적 성격으로 발전되는 사례도 있다(예컨대 유기농 조사를 조합비로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새로운 시장 창조에 이어졌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표 1>에 대하여 우선 사업체적 성격 부분은 투입 및 산출 모두 기존 영리기업 회계를 사용함으로써 충분한 제시가 가능하다. 한편 공동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구매 참여와 이용실적 배분금 등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파악을 위한 재검토가 세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15]. 그리고

이들이 목적의식적으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반복하는 집단에 속한다(김형미, 2013: 17).

15) 일반 협동조합에 관한 과세 이론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형식 또는 문언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 상 이용실적 배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 혼란이 생기고 있으며 조합원이 받는 이용실적 배분금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

공동체적 산출에 대해서도 그 측정을 위한 SROI, Social Impact 등 관련 연구가 다수 추진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 투입 특히 무상 활동(자원봉사), 현물기부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협동조합 활동에 있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회계 및 법제도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협동조합에서 무상으로 활동하거나 현물기부와 같은 행위가 공식적, 사회적으로 인정되기보다는 사적인 비용 지출, 개인적 시간과 노력(勞力)의 희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조장될 수 있다. 이 부분 즉 수익성이 낮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노력(勞力)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우선 회계 상 손익 계산서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법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기반 확대를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협동조합에 대한 공동체적 투입의 가시화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회계는 일반 영리기업과 다를 바 없으나 협동조합의 인적 구성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여 자본과 부채 등 현물과 화폐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한편 자원봉사, 후원자의 활동이나 현물기부 등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회계 상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차비나 식대를 지불하면 그 비용만 회계 상 손익 계산서에 흔적이 남게 된다. 즉,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형성되는 경험, 노하우 등 생산적, 실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회계 상 손익 계산서에

기 위해서는 첫째, 이용실적 배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전제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배분 차이에 대한 입법, 둘째, 이용실적 배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명확한 규정 보완 및 협동조합 기본법 조문과 세법 간의 용어 수정, 셋째, 소득세법 상 이용실적 배분금이 배당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예외적 문구를 배당 소득 규정에 포함하고, 조합원이 받는 이용실적 배분금은 소득세 과세소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적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김수란, 2014: 74-77).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6].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물심양면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 참여는 정부를 통한 세금 징수와 이에 기초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느 정도는 대신할 수 있는 한편, 지역주민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후자의 경우 그 참여를 위한 시간이나 노력(勞力)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보다는 개인적 비용 지출이나 희생으로 간주되기 쉽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여가 정부에 대해서는 납세액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각종 주민조직, 특히 협동조합 회계에 있어서는 무상 활동, 현물기부 등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공식적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한편 수익성이 낮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수익성이 낮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국가 복지 체계 틀에서 지원을 받아 접근할 것인지, 조합원 참여를 통하여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그 혼합 형태로 접근할 것인지 라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회계 상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와 인정, 비교하기가 어렵다. 단지 차비나 식대의 비용만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 활동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무상 활동, 현물기부 등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보고서는 제한적 의미밖에 지니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경영자는 물론 이해 관계자들이 해당 협동조합의 실태에 대하여 사업적 부분만 파악하게 되고 공동체적 부분의 특성을 협소하게 이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실태 즉 사업체적 성격과 공동체적 성격 양쪽을 가시화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회계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적 기준을 정비하

16) 조합비는 경영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로 처리되지만 조합비를 단순한 관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협동조합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해 관계자에 의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Ⅲ. 사례 분석

1. 일본 NPO법인 회계기준

1) 도입 배경

일본에서는 1998년 3월에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이하, 'NPO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17] 그 후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수많은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이하, 'NPO법인'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고 2015년 기준으로 50,870개 NPO법인이 존재한다. NPO법은 '특정 비영리 활동을 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시민에 의한 자유로운 사회공헌 활동인 특정 비영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PO법 제1조)고 되어 있다. NPO법인 설립에는 법령 위반이 없는 한 소관 부처가 반드시 인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증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나 '인가'에 따른 경우와 달리 자유로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NPO법이 자유롭고 활발한 시민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행정에 의한 관여도를 낮추자는 취기가 담겨 있는 것이다(NPO法人會計基準協議會, 2011: 41).

행정 관여도를 낮추는 대신 NPO법은 NPO법인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공

17) NPO법 제정의 배경으로 기존 시스템의 제도적 한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도시형 사회, 고령형 사회, 지방분권의 추진과 재정 개혁 그리고 직접적 계기로 1995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에서 자원봉사자가 활약을 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帶刀·北川, 2004: 226-229).

개를 요구하고 있다. 매 사업 연도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활동 계산서 등의 서류를 소관 부처에 제출하고 소관 부처는 그것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NPO법 제28조). 즉, 시민이 전개하는 비영리 활동을 시민 스스로 감시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NPO법인을 육성하는 반면 부적절한 NPO법인을 인지함으로써 NPO법인 제도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에 의한 감시를 기대한 정보공개'와 '행정 관여도를 낮춘 자유로운 시민활동'은 수레의 양륜과 같은 관계에 있다(NPO法人會計基準協議會, 2011: 41).

그러나 NPO법인 회계에 있어서는 <표 2>와 같은 실무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그리고 인력 측면에 있어 문제가 당초부터 지적되고 있었다(横田, 2013: 2).

<표 2> NPO법인 회계기준 도입 전의 문제점과 필요성

구 분	기존 문제점	회계기준 책정에 필요한 내용
실무적 측면	- 단체마다 다른 회계방법, 비교 어려움 - 손익 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불일치 - 애매모호한 지출 항목 - 결산서 주기(注記) 부재	- NPO법인 회계 보고에 통일적 기준 마련
법제도적 측면	- NPO법에 '손익 계산서'에 대한 정의가 없어 통일성이 없음	- NPO법에 의한 NPO법인 회계기준 인정 - '손익 계산서'를 '활동 계산서'로 전환
인력 측면	- 회계전문 직원을 고용하거나 전문가를 연계할 비용의 부족 - 복식부기에 능숙하지 않음	- NPO법인 회계 책임자에게 지침 제공

실무적 측면으로 첫째, 손익, 공익법인 회계 등에 대한 회계 방법이 각 단체마다 달라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산서 비교가 어려웠다. 둘째, 손익 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정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계정과목의 차변, 대변 분류 어려움), 셋째, 지출 란을 읽어도 어떠한 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이

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넷째, 결산서 주기(注記)가 없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18].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NPO법에 '손익 계산서'에 대한 정의가 없어 통일성이 없었다.

그리고 인력 측면에서는 소규모 NPO법인이 많아 회계 전문 직원을 고용하기가 어려우며 회계, 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다. 이로 안하여 법인세 신고 시기가 와야 비로소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다른 NPO법인 회계의 지침을 작성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즉, 정보공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NPO법인 회계 보고에 대하여 통일적 기준을 작성하여 NPO법인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적정한 상황 파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회계 보고의 내용을 다른 단체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자에 의한 선택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 NPO법인 회계 책임자에게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NPO법인의 자율적 발전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국민생활 심의회가 NPO법인 회계기준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NPO법인 회계기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가 구성되었으며, 그 자문기관으로서 NPO법인 회계기준 책정 위원회가 설치되었다[19]. 그리하여 2010년에 최종 협의회에서 NPO법인 회계기준이 승인되어 공표되었다(NPO法人會計基準協議會, 2011: 42). 이어 2011년에 NPO법이 개정되면서 NPO법인 회계기준이 실질

18) 수천만 엔 사업규모인데도 세법상 수익사업 대상 외이기 때문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직원 중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있거나 실비정산방식으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나 자립지원법에 따른 취업훈련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 외 정관에 특정 비영리 활동만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관계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横田, 2013: 3).

19) 전국에서 NPO지원조직과 회계 세무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기준 책정 이후 NPO법인 회계기준 협의회의 활동내용은 인터넷 및 소관 부처 등으로부터의 질문에 대한 응답. 책자 발행, 기준 보급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제언, 소관 부처, 전문가 조직, 지원재단과의 연계, 기준의 문제점 파악과 개정을 위한 준비 등이다.

적으로 인정되었다(横田, 2013: 8). 같은 해 내각부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NPO법인 회계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다.

<표 3> NPO법인 회계기준 책정 시에 중요시된 관점

구 분	내 용
1. 지원자 관점 중시	- 알기 쉬운 회계
2. 정확성 확보	- 복식부기를 전제로 한 재무제표 체계(대차대조표와 활동 계산서 + 주기(注記))
3. 다양한 실태에 배려하면서 통일성 마련	- 중요성 원칙, 4개의 양식 제시
4. NPO법인의 특성 반영	- 자원봉사와 현물기부를 숫자로 취급 가능
5. 사용하기 쉬운 기준을 민간에서 마련	- 법령에 의한 의무화가 아닌 시민, NPO법인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인 회계기준 마련

자료: NPO法人會計基準協議會(2011: 14-15); 横田(2013: 10).

NPO법인 회계기준 책정 시의 중요시된 것은 시민에게 알기 쉬운 회계 보고라는 것과 사회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정확한 회계 보고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회계 보고의 정확성 확보, 회계기준의 통일성 확보, NPO법인의 특성 반영 그리고 민간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라는 관점이 중요시되었다.

2) 기준 내용

NPO법인 회계기준의 전체 구성은 서론, NPO법인 회계기준(본문[20]과 주석), 양식, 재무제표 과목 및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다. 그중 본문에

20) 본문은 Ⅰ. NPO법인 회계기준의 목적, Ⅱ. 일반원칙, Ⅲ. 재무제표 등의 체계와 구성, Ⅳ. 수익 및 비용의 파악과 계산 (1), Ⅴ. 수익 및 비용의 파악과 계산 (2), Ⅵ. 기타 사업을 실시할 경우의 구분 경리, Ⅶ. NPO법인에 특유한 거래 등, Ⅷ. 재무제표의 주기(注記)'의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다.

나와 있는 NPO법인 회계기준의 목적은 <표 4>, 재무제표 등의 체계와 구성은 <표 5>와 같다.

<표 4> NPO법인 회계기준의 목적

구 분	내 용
1	- NPO법인의 회계 보고 질을 높이고 NPO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할 것
2	- 재무 관점에서 NPO법인의 활동을 적정하게 파악하고 NPO법인의 지속 가능성을 제시할 것
3	- NPO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위탁받은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것
4	- NPO법인 재무제표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
5	- NPO법인 재무제표 등의 작성 책임자에게 회계 기침을 제공할 것

<표 5> 재무제표 등의 체계와 구성

구 분	내 용
NPO법인의 재무제표 등	- NPO법인은 재무제표(활동 계선서 및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활동 계산서	- 활동 계산서는 당해 사업 연도에 발생한 수익, 비용 및 손실을 계상함으로써 NPO법인의 모든 순재산 증감 상황을 명확히 표시하고 NPO법인의 활동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된다
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는 당해 사업 연도말 현재에 있어서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재산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어야 된다
재산목록	- 재산목록은 당해 사업 연도말 현재에 있어서의 모든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그 명칭, 수량, 가겨 등을 자세히 표시하는 것이어야 된다

NPO법인 회계기준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받아들인 경우나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시설 제공 등 물적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있어 종전과 같이 회계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방법에 더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기(注記)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기

(注記)에 더하여 활동 계산서에 대한 계상도 가능하다(特定非營利活動法人の會計の明確化に關する硏究會, 2011: 7).

NPO법인 회계기준에 있어 NPO법인에 특유한 거래는 <표 6>과 같이 취급된다[21].

그리고 이에 대한 재무제표 주기(注記) 양식은 <표 7>과 같다. NPO법인이 영리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NPO법인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방법이 수익의 주요 부분이 아니라 기부금이나 조성금,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적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수익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리기업의 경우 거의 '판매액'만이 수익이 되는 데 비하여 NPO법인의 경우는 사업수익 외에 수취 회비, 수취 조성금 · 수취 보조금 등 다양한 자금조달 원자(原資)인 수익이 있는 것이다.

NPO법인에 대한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영리기업으로 말하면 판매액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본 출자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NPO법인에 이 만큼의 자금을 제공할 테니 이에 맞게 본인에게 환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지원자의 기대가 그러한 제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22].

21) NPO법인을 지원하는 세제로 인정 NPO법인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인정된 NPO법인에게 다양한 지원 세제가 제공되는 것이다. 그 조건 중의 하나로 '퍼블릭 서포트 테스트'가 있으며 이는 전체 수입 중에 기부가 점하는 비율이 20% 이상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20% 이상이면 일반시민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높다, 즉 공익성이 높다고 국세청이 판단한다. 이 때 기부금 수입에는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현물기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 상 현물기부를 인식하는 경우 '인정'을 받기가 쉬워진다.

22) 이에 대하여 NPO법인에 대한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의 재화나 서비스 제공은 영리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자본 거래'가 아니라 비영리 법인에 특유한 '증여 거래'라고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NPO法人會計基準協議會, 2011: 51).

<표 6> NPO법인에 특유한 거래 등의 취급 방법

구 분	내 용
현물기부의 취급	- 수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격은 취득 시에 있어서의 고정한 평가액으로 한다.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시설 제공 등을 받은 경우의 취급	-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시설 제공 등의 물적 서비스를 받은 경우로 제공을 받은 부분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기(注記)할 수 있다. - 또한 당해 금액을 외부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기(注記)에 더하여 활동 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역무 제공의 취급	-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활동 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에 의한 역무 제공을 받은 경우로 제공 받은 부분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기(注記)에 더하여 활동 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다.
사용방도 등이 제약된 기부금 등의 취급	- 기부 등에 의하여 받아들인 자산으로 기부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당해 자산의 사용방도 등에 대하여 제한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동시에 그 사용방도마다 받아들인 금액, 감소액 및 사업 연도말 잔고를 주기(注記)한다.
반환의무가 있는 조성금, 보조금 등 미사용액의 취급	- 대상사업 및 실시기간이 정해져 있고 미상용액 반환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조성금, 보조금 등에 대하여 실시기간 도중에 사업 연도말이 도래한 경우의 미사용액은 당기 수익에 계상하지 않고 전수(前受) 조성금 등으로 처리해야 된다.
후불 조성금, 보조금 등의 취급	- 대상사업 및 실시기간이 정해져 있는 조성금, 보조금 등 중에서 실시시간 만료 후 또는 일정기간마다 교부되는 것으로 사업 연도말에 미수 금액이 있는 경우, 대상사업 실시에 따라 당기에 계상한 비용에 대응하는 금액을 미수(未收) 조성금으로 계상한다.
대상사업 및 실시시간이 정해져 있는 조성금, 보고금 등의 주기(注記)	- 대상사업 및 실시기간이 정해져 있는 조성금, 보조금 등으로 당기에 수취 조성금 또는 수취 보조금으로서 활동 계산서에 계상한 것은 사용방도 등이 제약된 기부금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조성금이나 보조금 등마다 받아들인 금액, 감소액 및 사업 연도말 잔고를 주기(注記)한다.

<표 7> 재무제표 주기(注記) 예시(NPO법인에 특유한 거래 부분)

1. 중요한 회계방침

재무제표 작성은 NPO법인 회계기준(2011년 11월 20일 일부개정, NPO법인 회계기준 협의회)에 의거하고 있다.

(1) 시설 제공 등의 물적 서비스를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시설 제공 등의 물적 서비스를 수용은 활동 계산서에 계상하고 있다. 또한 계상액 산정 방법은 '2. 시설 제공 등의 물적 서비스 수용 내역'에 기재하고 있다.

(2) 자원봉사자에 의한 역무 제공

자원봉사자에 의한 역무의 제공은 '3. 활동 원가 산정에 있어 필요한 자원봉사자에 의한 역무 제공의 내역'으로 주기(注記)하고 있다.

2. 시설 제공 등의 물적 서비스 수용 내역

(단위: 엔)

내 용	금 액	산정 방법
○○체육관 무상이용	×××	○○체육관 사용 요금표에 의거하고 있음

3. 활동 원가 산정에 있어 필요한 자원봉사자에 의한 역무 제공의 내역

(단위: 엔)

내 용	금 액	산정 방법
○○사업 상담원 ■명 * ■일간	×××	단가는 ××지구 최저임금에 의거하여 산정

4. 사용방도가 제약된 기부 등의 내욕

사용방도 등이 제약된 기부는 다음과 같다. 본 법인의 순재산은 ×××엔이지만 그중 ×××엔은 아래와 같이 사용방도가 특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방도가 제약되어 있지 않는 순재산은 ×××엔이다.

(단위: 엔)

내 용	전기 이월액	당기 수용액	당기 감소액	차기 이월금	비 고
○○지진피해자 원조사업		×××	×××	×××	지원용 물자. 다음 날 아침 배포 예정.
△△재단 조성 ××사업		×××	×××		조성금 총액은 ××엔. 당기 수용액과의 차액 ××엔은 전수(前受) 조성금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음.
합 계		×××	×××	×××	

NPO법인에 대한 그러한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것은 현금·예금을 통한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물기부는 종래 회계보고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제공되는 것이 현금·예금이든 물품이든지 간에 그 실질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NPO법인 회계기준에서는 현물기부를 공정한 평가액으로 받아들여 회계 보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3].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시설 제공 등의 물적 서비스를 받은 경우, 그것을 종래와 같이 회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방법에 더하여 합리적으로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기(注記)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그 금액을 외부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동 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강한 표현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자가 이용자에게 그 금액 평가의 근거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있음을 말하며 '객관적'이라고 함은 이에 더하여 누구나 입수할 수 있는 구체적 외부자료가 존재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의한 역무 제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NPO法人會計基準協議會, 2011: 149-150).

또한 NPO법인은 자원봉사자에 의한 무상의 노력(勞力)에 지탱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이 역시 영리기업에 없는 특징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노력(勞力)을 금액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NPO법인의 진정한 활동규모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군다나 사업 활동은 거의 자원봉사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어 유급 직원은 관리업무만 하고 있는 NPO

23) 공정한 평가액에 대해서는 노선가, 고정자산세 평가액, 견적 매각액, 정가 등 다양한 것을 참조할 수 있으나 회계기준 자체에는 한정하지 않고 예시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요성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낮은 것까지 모두 평가하지는 않고 또한 원래 금액평가가 맞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산목록에 물량으로 표시하고 금액란에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NPO法人會計基準協議會, 2011: 52).

법인의 경우 얼핏 보면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관리 업무에 대해서만 돈을 쓰고 있는 것처럼 간주되어 버리는 폐해가 있었다. 자원봉사자의 인건비 평가 상당액을 계상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계기준에서는 앞의 물적 서비스의 무상 제공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종래와 같이 회계 보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방법을 그대로 인정하는[24] 한편 합리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기(注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금액을 외부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파악 가능하면 활동 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 계산서에 계상할 경우, 수익 부분에 '자원봉사자 수용 평가수익'을 계상하고 비용 부분에 이와 동액의 '자원봉사자 평가 비용'을 계상하게 된다.

단, 활동 계산서에 계상하게 되더라도 NPO법인 활동의 원가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응한 금액에 대해서만 한다.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의 시설 제공 등의 경우와 달리 자원봉사자에 의한 역무 제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에 의한 역무 제공'에 한정된다. 이는 활동 원가를 산정할 때에 어떻게든 자원봉사의 노력(勞力)을 평가하지 않으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일상적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노력(勞力) 제공 등을 평가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25]. 자원봉사자 인건비 계상 문제 또한

24) 이 경우 사업 보고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할 방법이 있다(NPO法人會計基準協議會, 2011: 54).

25) '활동 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원봉사'란 사업 실시에 있어 금전을 지불하더라도 필요한 범위의 자원봉사자 노력(勞力)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외적 사업이나 활동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조직 내부의 일상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원봉사'로서 금전 환산한 평가나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활동 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의 구체적 사례는 국제회의나 행사에 참여한 통역 자원봉사자, 컴퓨터 교실의 강사 자원봉사자, 소식지 발생을 위한 취재·편집 자원봉사자, 학대나 폭력, 다중 채무자에 대한 전화상담 자원봉사자, 개발도상국 난민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홈페이지 작성·갱신을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활동 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원봉사'로 인식하기 어려운 사례는 일상적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보수 임원, 일상적 관리

NPO법인에 특유하고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액 측정 방법과 관행이 성숙되어 가면서 많은 NPO법인이 활동 계산서에 계상하고 다른 법인 등과의 활동규모 비교가 용이하게 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NPO法人會計基準協議會, 2011: 53-54).

2. 일본 NPO법인 회계기준 도입의 성과와 과제

1) 성과

NPO법인 회계기준 도입의 성과는 민간 주도형, 시민 참여형으로 회계기준을 책정하였고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 담당자와 소관 부처의 질문, 의문이나 실무 상 필요성에 기초하면서 회계기준을 발전시킨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NPO법인 회계기준 도입의 내용적 성과를 살펴보면 <표 8>처럼 손익 계산서의 활동 계산서 전환, 주기(注記) 도입 등이 있다.

업무의 보조적 작업에 종사하는 인턴 학생,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영리기업의 평균적 급여수준보다 낮은 급여 지급액으로 종사하고 있는 유급 직원 등을 들 수 있다. 단, 조직내부의 일상적 관리업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고 그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되는 경우에는 '활동 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원봉사'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시설의 무상 제공의 경우와 달리 그 활동이 필요로 하는 원래의 인원수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 전원의 평가액을 산정하면 활동 원가가 필요 이상으로 증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활동 원가 산정에 있어 '필요한 수용액'만 금전 환산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NPO法人會計基準協議會, 2011: 147-148).

<표 8> NPO법인 회계기준 도입의 성과

구 분	내 용
손익 계산서를 활동 계산서로	- 현금주의에서부터 발생주의로, 원칙 복식부기로
사업비를 형태별 분류로	- '어느 사업비가 얼마'로부터 '인건비 등은 얼마'로
사용방도가 제약된 기부 등의 취급	- 사용방도의 제약이 있는 기부 등은 원칙적으로 주기(注記) 처리
자원봉사자 등의 취급	- 자원봉사자 등을 회계에 받아들임
소규모 법인 대응	- 4가지 양식(활동 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제표의 주기(注記) 및 기타 사업이 있는 경우의 활동 계산서), 중요성 원칙

자료: 横田(2013: 12).

2) 과제

2012-13년에 일본 전국 약 18,000개 법인(2011년도 회계 보고)을 대상으로 실시된 NPO법인 회계기준 보급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결산을 활동 계산서로 보고한 비율은 17.3%, 그중에서도 제목만 활동 계산서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주기(注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 한편 소관 부처와 지원센터, 전문가가 연계하여 회계 안내서를 만들거나 자세한 회계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보급되어 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협의회 차원에서는 각 NPO법인에 대한 기준 보급과 질문 대응, 회계기준 백서를 활용한 상황 공유와 지역 내 회계상담 체제 구축, 회계기준 보급조사의 계속 실시, 기준개정을 위한 협의회 체제 정비, 세무사회·회계사 협회 등과의 연계 추진, 재단·기업과의 연계 추진, NPO법인 회계에 대한 인재 육성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横田, 2013: 15-21; NPO法人會計基準協議會, 2013).

NPO법인 회계기준은 수입규모 500만 엔 이하인 소규모 NPO법인이 많다

는 상황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NPO법인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회계기준의 개념을 보급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관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향후 NPO법인이 성장하면서 수입규모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 확대에 따라 시민들에 대한 설명책임 역시 증대할 것으로 앞으로 NPO법인 회계기준에 더 정밀하고 명확한 회계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회계기준의 지속적 재검토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特定非營利活動法人の會計の明確化に關する硏究會, 2011: 14-15).

Ⅳ. 결 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상 본 연구는 한국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합한 회계기준 설정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본 NPO법인 회계기준 그중에서도 특히 현물기부와 자원봉사 부분에 초점을 맞춰 향후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에 맞추어 급조되었고[26] 그 한계로 인하여 시행 후 3년 사이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현재 관행대로 한다면 부동산 정도만 현물 출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사업자들이 원래 하던 일을 여럿이 모여(예컨대 광고업자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하는 경우)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사용하던 장비, 비품 등을 현물로 출자해야 되지만 이러한 설비와 비품 등은 모두 자산으로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27].

일본 협동조합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은 비교적 적지만 자원이 부족한 상

26)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27) 개인 사업을 할 때 중고이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을 하다가 협동조합으로 자산을 이관하면 중고로 평가를 받아 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기부와 성격이 다른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 인정 폭 등에 대해서는 본 논문과 별도로 연구를 진해할 필요가 있다.

황에서 조합원들이 시간 노력을 자본대신 우선 투입하고 이에 상응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의 시간과 노력은 회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의 자산에 대해 비용이나 투자자산으로 계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현물 출자, 시간과 노력 등 비금전적 자산의 투자 및 자원봉사 모두 필요하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회계 상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는 결산 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 중의 하나로서 손익 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손익 계산서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손익 계산서, 결산 보고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일반 영리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손익 계산서가 작성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공동체적 성격을 나타내는 자원봉사, 현물기부 등이 기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회계 상 협동조합의 사업체적 성격만 부각되는 반면 공동체 성격을 포함한 협동조합의 실제적 활동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자원봉사와 현물기부가 손익 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 판단에서 고스란히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회계 및 법제도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회계 상의 가시화가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일본 NPO법인 회계기준을 살펴보았다. NPO법인 회계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NPO법에 '손익 계산서'에 대한 정의가 없어 통일성이 없었지만 2010년에 NPO법인 회계기준이 마련된 이후부터는 NPO법인에 특유한 성격을 고려한 회계처리가 통일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우선 기존의 '손익 계산서'를 '활동 계산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 현물기부 등에 대하여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재무제표에 주기(注記)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동 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원봉사와 현물기부가 숫자로 취급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자원봉사, 현물기부에 대한 회계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손익 계산서를 가령 '협동 계산서'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하고 이에 자원봉사, 현물기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28].

일본에서는 관의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NPO법인 회계기준을 법제화하지 않고 있지만 NPO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조문 내에 있던 '손익 계산서'를 '활동 계산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즉, NPO법인 회계기준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기존 손익 계산서를 가령 '협동 계산서'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하고 협동조합 회계기준이 마련된다면 이를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인정함으로써 그 실효성과 보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29]. 협동조합 회계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손익 계산서에 의거하여 주관 부처가 주 사업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0].

---

28) 단, 회계 전문성 확보에 시간적, 경제적 한계가 있는 협동조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된 부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보 이용자의 객관적 이해를 도모하는 수준에서 제도 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9) 현시점에서 자원봉사, 현물기부 등에 대한 회계기준(안)을 제시하자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자원봉사, 현물기부 등에 대한 회계기준(안)

구 분	내 용
손익 계산서를 협동 계산서로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칙
자원봉사자 등의 취급	- 자원봉사자, 현물기부 등을 회계에 받아들임
소규모 법인 대응	- 4 가지 양식(협동 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제표의 주기(注記) 및 기타 사업이 있는 경우의 활동 계산서)을 마련하고 회계 열람자에게 오해를 초래하지 않는 한, 가급적 간편한 방법에 의한 기록 허용(중요성 원칙)

구체적으로 우선 자원봉사와 현물기부를 회계 상 반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5절 회계 부분에 있어 협동조합 회계기준을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사회적 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에 있어서는 협동조합 회계기준에 따라 자원봉사, 현물기부 내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1]. 한국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회계 등 이미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바, 앞으로 회계기준 정비와 법적 검토의 상호 보완 그리고 일본 외의 국가들 사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일본 NPO법인 회계기준에 대하여 기초적인 수준에서 현물기부와 자원봉사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일본 NPO법인 회계기준은 그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인정 NPO법인'에 기부한 경우의 주어지는 세제 혜택과 NPO법인 회계기준이 서로 맞물리고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한국의 협동조합 운영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회계와 법제도 설계 및 일본 NPO법인 지원제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30) 영국의 공동체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의 경우 감독관의 감독기능과 보고서 제출의무와 같은 통제규정이 있어 투자자나 자선사업 재원 제공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강정혜, 2014: 24-25).

31) 본 연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고찰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비용으로 볼 때는 그 사업에 얼마나 비용을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투입과 성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실제 주요사업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서는 국가 공익성 사업을 회계 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관련된다.

참고문헌

강정혜(2014). “영국의 공동체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에 대한 논고”, 「서울법학」 22. pp.1-28.

기획재정부(2015).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소남(2013). “1960~80년대 원주지역의 민간주도 협동조합운동 연구—부락개발, 신협, 생명운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수란(2014).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이용실적배분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실(2004).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신용협동조합의 역할 제고 방안—인천광역시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형미(2013). “공동체운동이란 무엇인가—‘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남윤환(2016). “계층분석방법(AHP)을 이용한 기본법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대호(2016). “충북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과제”,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포럼 in 충북.

박봉진(2016). “인적자원회계 시스템의 도입모형에 관한 연구”, 동양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승의(1984). “인적자원회계에 관한 연구—회계적측정과 그 실용「모델」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부설 경영경제연구소 경상논집」 6(2). pp.249-281.

박진(2006). “지역금융 변화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성용 · 권해숙·최영문(2009). “인적자원의 회계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23(2). pp.73-93.

이금노(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30. pp.1-12.

이원빈(2012). “문화예술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영(2013).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도내 협동조합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2013 충북사회적경제 포럼 자료집 pp.75-79.

장원봉(2014). 「사회적 회계—사회적 경제의 공익 활동을 위한 관리 도구—」, 상상너머.

정성군·송춘호(2015). 「세계 대표 기업들이 협동조합이라고?」, 모아북스.

최순우(1987). “인적자원회계에 관한 체계적 고찰”, 「협동조합경영연구」 9. pp. 73-9.

최은주·고성옥(2014). “회계정보를 이용한 재무제표분석과 활용방안”, iCOOP 시민협동대학 교재.

최춘방(1983). “민간주도형 협동조합운동의 사회경제사적 고찰—신용협동조합을 中心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협동조합 기본법(일부개정 2016.3.2. 법률 제14053호).

帯刀治·北川隆吉(2004). 「社会運動入門—社会運動研究の理論と技法」, 文化書房博文社.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最終改正 2013.11.27. 法律 第86号).

特定非営利活動法人の会計の明確化に関する研究会(2011). “特定非営利活動法人の会計の明確化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横田能洋(2013). “NPO法人会計基準導入の意義と普及状況、今後の課題”, 会計基準協議会.

NPO法人会計基準協議会(2011). 「NPO法人会計基準」, 八月書館, 2011.

NPO法人会計基準協議会(2013). “NPO法人会計基準白書2012(要約版)”.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1966).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Evanston, Illinois.

Eric G. Flamholtz(1974). "Human Resource Accounting: A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The Journal of Measurement Studies.*

Social Value UK(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and Social Accounting and Audit (SAA).

Direction to Set Accounting Standards Conformed to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 Based on Accounting Standards of Non Profit Organization in Japan

Nemoto, Masatsugu* · Lee, In Young**

< *Abstract* >

This study focused on accounting standards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Japan to find out future direction to set accounting standards conformed to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Korea. In-kind donations and volunteer activities as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s are not included in financial report of cooperatives based on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Korea. Therefore cooperatives can be estimated lower than its real value in its financial report. On the other hand accounting standards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Japan can convert volunteer activities and in-kind donations into money value through annot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r entry to an activity statement. The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Korea need more consideration to reflect the realities of cooperative activities to promote its supporting system.

* Research Fellow,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Executive Director, Social Cooperative Friends.